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이동제한 명령서

제 2023-29 호

시설	시설명 **소 사육농가**							
	소재지 **럼피스킨이 발생한 시·군 및 인접 시·군**							
소유자 (관리자)	성명				생년월일			
	주소				전화번호			
명령의 내용	명령의 구분 **이동제한**				명령의 이유 **LSD 발생 및 확산 방지**			
	이행장소 **소 사육농가**				이행기간 **2023.10.25. ~** **대상지역 사육 소** **백신접종 완료 후** **3주 경과 시**		대상 두수	
명령대상	가축	축종	품종	성별	연령	귀표(개체)번호	특징	비고
		소						
	사람	**축산관계자**						
	차량	**소 관련시설(농장, 공장 등 포함) 방문 시설출입차량**						
준수사항	○ **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(소) 반입* 및 반출 금지** * 대상 지역 외(내)부에서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으로 생축(소) 반입금지 -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적용 - 도축장으로 소 생축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*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(고압분무기 등)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→ 해당 도축장에서는 소독 확인증을 확인하고,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·소독 실시				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10월 25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 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